

M.C. C. 16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발행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 중구 정동 1-23, ☎:738-2883)

편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 ☎:522-104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특별법제정추진 특별위원회

거창여성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기독평화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서울YMC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자료집을 발간하며

검찰집계에 의하면, 80년에 연간 5천6백14건이던 강간범죄가 89년에 6천4백 75건, 90년에는 7천3백22건으로 늘었고, 92년 1월부터 3월까지 석달동안 중요 범죄의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가 감소했으나 강간범죄등 성폭력범죄는 1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함을 잘 응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룸살롱, 카페, 요정, 안마시술소, 사우나, 퇴폐이발소, 터키탕, 러브호텔등의 향락산업은 오늘날 전국 45만개 이상이나 되고 있으며 이들 향락업소의 연간 매출액이 연 4조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전반의 풍토가 성의 상품화와 성폭력범죄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부녀자 인신매매, 강도강간, 어린이 성폭행, 근친강간, 아내에 대한 성적학대로 직결되는 아내구타, 직장내 성적희롱, 강제된 매매춘의 양상으로 다양화 되어 가고 날로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이제 결코 개인의 고통일 수 없으며, 더 이상 여성개인의 운이 나쁜 일, 불행한 일로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성적 상품으로 대상화 시키는 반사회적, 반민주적, 반인간적인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특위는 성폭력 범죄의 추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형태별로 실태와 발생원인, 법적 제도적 대책방안, 행동지침등이 담긴 성폭력추방운동 자료집을 시리즈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 책자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폭력을 추방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며, 남성과 여성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2. 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혜수

부위원장 최영애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고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강간 뿐 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 제작, 판매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없는 사회, 우리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편견부터 점검하고 이웃에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을 알리도록 합시다.**

잘못된 생각 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일 뿐입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의 성적인 접촉, 음란전화 등도 성폭력입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 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 등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잘못된 생각 2

성폭력은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31%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는 최하 생후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는 화성연쇄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도 최하 10세부터 최고 71세까지입니다.

잘못된 생각 3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이 아니라, '남자는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남성 개인의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보다 남성의 공격적인 성 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4

여자들의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야한 언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풍토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은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서 신체가 많이 노출된 옷을 입은 여성만이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은 모순입니다. 피해자의 어떠한 옷차림이나 언동도 성폭력을 정당화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입니다.

잘못된 생각 5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때 아는 사람 이란 데이트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동료나 상사, 이웃집 아저씨나 아는 오빠, 근친(아버지, 의붓아버지, 오빠) 또는 친인척 (사촌오빠, 형부, 삼촌, 이모부, 고모부)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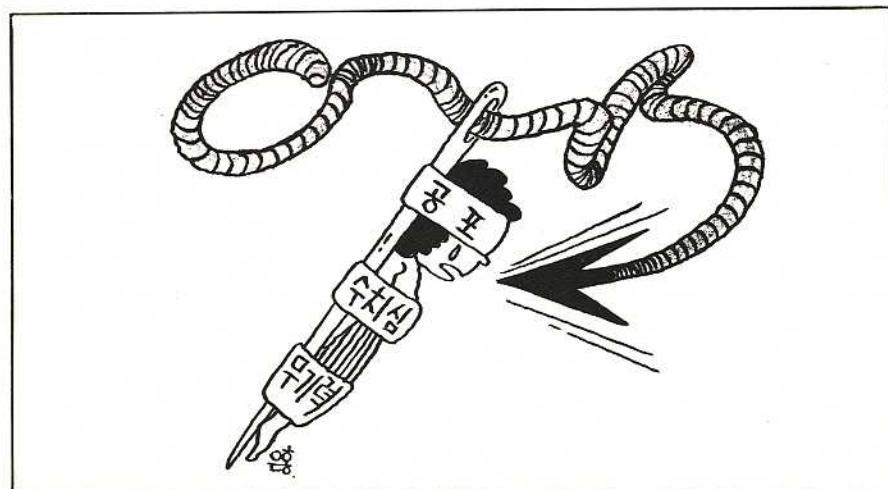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성관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란 남녀간에 애정이나 친밀감 등을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상호교감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강간은 여성의 뜻과는 관계 없이 일어난 행위이며 힘과 물리적, 심리적 강제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매개로 한 ‘폭력’입니다. 이는 엄연히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잘못된 생각 7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흥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항해도 강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뗄 수 있느냐?”라고 비유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피해상황에서 여성은 꽉 잡혀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을 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8

부부간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신체 통제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인은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입니다. 특히, 심한 구타 후에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아내강간입니다.

잘못된 생각 9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범 중에는 남달리 포악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멀쩡히 잘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꼼짝 못한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10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서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 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사회풍토의 척결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강간 발생 건수를 추산해 보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 해 동안 32만건, 하루에 877건, 1시간에 37건, 그리고 3분에 2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 집계에 따르면 1980년에 5,614건이던 강간범죄가 1989년에는 6,475건, 1990년에는 7,322건으로 나날이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1989년의 법무부 <범죄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간 신고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이 신고율로 실제 강간 발생건수를 추산해보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32만건, 하루에 877건, 1시간에 37건, 그리고 3분에 2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간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추행이나 성적 희롱 등 다른 성폭력도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290명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여성 가운데 76.4%가 가벼운 추행을 당한적이 있으며, 심한 추행은 23.7%, 성적 희롱은 48.6%, 성기노출은 74.5%, 강간미수는 14.1%, 강간은 7.7%의 여성들이 당한 적이 있고, 6.5%의 여성들이 어린이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가지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자끼리는 여행도 못가고, 혼자 집에 있을때 두려움을 느끼며, 밤 늦게 극장이나 공원에도 제대로 못갑니다. 이런 불편함은 모두 부당한 피해이며 이것 자체가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가 심각하며,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다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남자들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과 좌절, 불안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을 순결상실과 동일시하는 풍토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지 못할 때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려 정상적인 결혼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까지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한 조사에 의하면 강간피해자의 12%가 임신, 10%가 상해, 1.3%가 성병감염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성폭력의 충격과 후유증을 겪디다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주위에 알리겠다는 가해자의 협박과 돈 요구에 의해 연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사내의 소문에 의해 피해여성이 오히려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져 이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존재하는 잘못된 순결관에 의해 피해여성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차별과 성이중윤리가 문제입니다.
비정상적인 경제성장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문제입니다.
우리사회의 향락퇴폐문화가 성폭력을 부추깁니다.
성교육의 부재 또한 문제입니다.

성차별과 성이중윤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남성은 힘과 용기를 덕목으로, 출세를 최고의 목표로 삼으며 사회적인 일을 함으로써 생계부양자가 됩니다. 한편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와 순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고 결혼이 인생의 목표이며 가정일에 뮤여 생계 의존자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갖게되며 이것은 성관계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성은 성적인 대상물로 취급하면서 남성이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도 용기있고 남성다운 행동으로 여겨지거나 한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성폭력을 부추깁니다.



우리사회의 향락퇴폐문화가 성폭력을 부추깁니다.

우리나라는 30여년이 넘도록 군부독재정권이 집권해 왔습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비정치화하고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으로 향락퇴폐문화를 조장했습니다. 각종 프로스포츠단을 양성하여 경기상황을 장시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돌리고,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성행위들을 부추기는 영화, 비디오, 출판물의 범람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는 룸살롱, 카페, 요정, 안마시술소, 사우나, 퇴폐이발소, 터어키탕, 러브호텔 등의 향락업소는 전국 45만개로 추정되며 이들의 매출액은 연 4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술 접대문화는 성의 상품화와 맞물려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성행위와 성폭력을 부추깁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정상적인 경제성장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문제입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꾀하면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적인 성장을 저해했습니다. 게다가 경기불황 및 각종 투기사업에 의한 불로소득의 증가로 졸부들을 양산하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어려움에 허덕이던 중소기업과 졸부들은 단기간에 높은 이윤이 보장되고 투자 가치가 확실한 향락산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하고 대상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성적 자극과 외설이 상품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우리 생활 전반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 소비와 사치, 왜곡된 성의식을 수용하게 된 것이 오늘날 성폭력을 만연케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의 부재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라면서 ‘성’은 자연히 알게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성교육을 한다해도 단순히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에 대한 단편적 지식전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남성에게는 성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을, 그리고, 성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성에 대한 이중규범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중규범에 입각한 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을 접했을 때 쉽게 여성을 성적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성폭력을 자행하게 합니다.

성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올바르게 처벌하는 법규정 및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법적 개념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죄’로 새롭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성폭력 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 규정은 여성을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지켜야 할 정조 만”을 지닌 대상으로 보도록 하며,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불행으로만 보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자살, 가해자를 살해하게까지 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죄’로 새롭게 개념 규정을 함으로써, 성폭력은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의 행사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유형이 보다 세분화 되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 관련법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만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인신매매, 음란물 제조 및 판매, 성적 희롱, 강요된 매매춘 등에 대한 법규제는 서로 다른 법체계 속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많은 성폭력의 유형이 법의 규제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과 다양한 성폭력 범주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 해야 하며, 성폭력 유형에 있어서도 범죄의 정도 뿐 아니라 그 대상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행위에 따라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도강간, 인신매매, 강요된 매매춘, 공연음란, 성혐오행위(도색잡지, 음란만화, 음란영화, 음란비디오, 음란컴퓨터게임 등의 제작, 배포행위, 치부노출행위 등)로 구분하고, 대상에 따라서 직장내의 성폭력, 미성년자등에 대한 성폭력, 15세 미만의 자 등에 대한 간음, 신체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시 성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간(아내강간) 등으로 구분하여 세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유형별로 형사처벌, 자격정지, 교정처분, 교육훈련 등 형벌이 다양화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말이나 의사표현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나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하지 않은 모든 강제적 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행법 체계와 법집행 과정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집행시 가해자의 행동보다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냉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 왜 저항을 못했는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은 아닌가? 등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범죄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목숨을 건 저항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우게 되며, 많은 강간사례들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은폐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어렵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강제행위를 증명할 수 없어 가해자가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기 일쑤이며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해자는 놀라움과 충격으로 무력해지기 쉬우며, 물리적인 위협보다는 심리적, 경제적인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두어서는 안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하지 않은 모든 강제적 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성폭력이 은폐되거나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간의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들에 대한 간음,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등이 모두 피해자만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는 성폭력 범죄를 인간의 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보다는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와 함께,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고 조장함으로써 성폭력을 유발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을 척결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이 더이상 은폐되거나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집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치로 채택되어야 하며, 관련 여성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자료도 증거가치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보건소, 종합병원 내에 성폭력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비협조로 시립, 국립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우선의 원칙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끔찍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후에 몸을 씻어버리고 입고 있던 옷도 버리거나 세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증거확

보의 어려움이 상시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거확보를 위해 가해자의 정액이나 체모, 진단서 등을 확보하고자 하더라도 피해 이후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물적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단서를 떼려 하는 경우에도 병원측이나 의사측이 인식부족이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치로 채택되어야 하며, 관련 여성단체나 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증거가치로 채택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진술이 어려운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조사, 수사, 재판과정에 반드시 통역인이나 사회사업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보건소, 종합병원 내에 성폭력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폭력피해에 대한 병원의 인식부족이나 비협조로 진단서 발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관련 여성단체 및 기관의 방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자세한 성폭력 상황재현 등 비인간적 진술을 요구받거나 피해자의 성력이나 직업, 신분 등을 중시하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어 모욕감과 수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공개재판은 결국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모든 사법적인 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수사 및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여성단체나 기타 기관의 방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성차별적 시각이나 통념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성폭력 전담부서가 검찰, 경찰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남성들로 이루어진 사법처리 관계자들은 남성중심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사법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를 사회적 폭력범죄이자 인권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개인이 몸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해 보았자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좌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심정이나 상황, 증거확보 등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성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 전담부서 실무자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 및 여성문제에 대한 학습이 기획되고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돋는 전문상담기관 및 긴급구조기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 관련법에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무가 전혀 없습니다. 간혹 성폭력추방장치등이 있다하더라도 그 운용이 전시행정위주로 되어 있고, 수용소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동시에 이런 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일시적 보호시설 마련,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 제공, 피해자가 요양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별치료, 집단치료의 과정을 마련하는 것, 기타 피해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 등,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돋기위한 제도적 장치나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향락산업의 칙결로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합니다.

향락퇴폐업소와 음란영화, 음란비디오, 음란도서, 음란만화(스포츠만화), 음란컴퓨터게임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음란물의 범람은 사회전반에 걸쳐 특히 청소년층에게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왜곡된 성의식 및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만 인식하도록 하는 잘못된 성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독버섯처럼 늘어만 가는 요정, 룸쌀롱, 러브호텔, 퇴폐사우나 등 향락퇴폐업소, 이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허위광고, 구직자 유혹에 의한 유인, 납치 등에 의한 인신매매의 횡행, 눈만 뜨면 접하게 되는 음란물 등은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와 직장 환경을 향락지대화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행위는 사람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상흔, 인간을 수단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부재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향락퇴폐업소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음란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릇된 성문화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성’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은 자극적이고 타락한 성적인 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으로 해서 도색잡지, 도색비디오 등 음란매체와 퇴폐, 향락적인 사회환경에 의해 성에 관한 지식을 왜곡되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처에 편만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유해환경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회의, 특별활동, 교내방송, 강연, VTR, 영화관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성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속에 성문제에 대한 상담 및 성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순한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전달이나 순결교육의 차원에서 벗어나 성차별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강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몸을 셋지 말고 피해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산부인과 진찰의 목적은

첫째,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성병이나 임신여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째, 고소를 할 경우 이 진단서는 재판에 꼭 필요한 증거입니다. 몸에 멍이 들거나 다른 상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2. 전문상담기관이나 여성단체에 문의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02) 522-1040~2	거창여성회 0598-43-5561
한국여성의 전화	02) 337-4100	기독평화여성회 0652-87-3833
사랑의 전화	02) 776-5660	대구여성회 053-421-6758
전북여성의 전화	0652) 87-7324	부산여성회 051-87-7262
광주여성의 전화	062) 226-7739	서울 YMCA 732-8291, 교8
경남여성회	0551) 44-8400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한국여성민우회 313-1060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765-5448

3.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강간은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사실은 숨겨지게 되고 가해자의 범행도 벌을 받지 않아 결국 성폭력 범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경우, 가해자를 벌하고, 나아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주저 앉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방법 및 절차

1.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을 사고난 지역이나 가해자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냅니다.
3.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조서와 가해자 조서, 대질심문 등이 있습니다. 진술시에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꾸며서 얘기하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4.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5. 가해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시한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이므로 필요시 증인으로 출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비공개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1심에 불복하면 판결이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8. 형사재판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가해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 주소지의 법원이나 피해사고지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용어를 알아봅시다.**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항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구속/불구속 수사

피의자(가해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 求공판 = 공소의 제기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 : 사건발생 후 7년)

심리

판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재판의 전과정을 말합니다.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참고인 진술, 구형, 변론, 피고최후진술, 선고)

항소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받은 제 1심판결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의 확정 전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심 선고공판후 7일이내에 해야합니다.

상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의 확정 전에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심 선고 후 7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고소인에게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 1) 기소유예 : 검사가 피의자를 용서.
- 2) 혐의없음(무혐의) : 무죄(주로 채권, 채무관계에서).
- 3) 공소권 없음 : 6개월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
- 4) 기소중지 :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범행사실을 부인한 경우, 또는 증인의 행방불명시 전국적으로 지명수배가 나감. 사실상 미결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5) 죄가 안됨 :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특정인이 그 러한 행위를 한 증거가 확실해도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 추방은 우리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 로부터 출발합니다. !!!

- ▶ 차내에서, 혹은 거리에서, 실내에서 성적인 접촉이나 추근 거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을 보면, 상대 남성에 대해 “이 사람 왜 아래? 나쁜 사람아냐?” 등의 표현을 하여 피해여성을 도와줍시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여성을 보고 웃거나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모두는 성폭력의 공범이 됩니다.
- ▶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한 말을 하지는 않았나 반성해 보고 앞으로는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 ▶ 성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즉각 이의를 제기합시다.
- ▶ ‘성폭력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호신술을 익혀둡시다.
- ▶ 퇴폐적인 외설 출판물이나 영화, 비디오는 사지도 보지도 맙시다.
- ▶ 직장 내의 술 접대문화를 척결합시다.